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안내(1차)

2020. 2. 7.

목 차

I. 목적 및 기본방향	3
1. 목적	3
2. 기본방향	3
II.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	4
1. 시설급여 등 종사자 근무시간 인정범위	4
2.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인정범위 ...	5
3. 주야간보호 급여 인정범위	7
4. 급여비용 인정범위	8
▷ 불 임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행동요령	9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10
3.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12

I

목적 및 기본방향

□ 목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급여제공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1차)」을 안내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362(2020.2.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기준 행정지침 안내”

□ 기본원칙

- 2020년 2월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외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1차, 2020.2.7.)임.

⇒ 감염병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또는 추가 기준 필요 시 별도 홈페이지 안내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질병관리본부, 4단계) → 2020.2.7.현재 ‘경계’ 단계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관심 (Blue)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 신종 코로나 관련 예외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을 적용 시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록 등이 수반되어야 함.

※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중국(싱가포르, 태국, 일본 포함)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등

- 종사자의 업무배제는 국내 확진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4개국 국가(중국, 싱가포르, 태국, 일본)에 한하여 인정함.

-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적용 시에도 수급자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Ⅱ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

1. 시설급여 등 종사자 근무시간 인정범위

□ 종사자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기준

○ 종사자가 확진 또는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치료·격리 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급병가’로 처리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 (확진자가 발생 시) 완치 시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 인정
 - (의심되어 격리 시) 1일 8시간,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
- ⇒ 세부사항 제12조에 따른 ‘병가일수’에 불포함 가능

※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항공권 등 치료·격리 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반드시 보관

< 참고 > 근무시간 등록방법 : 휴가사유 “예외인정” 선택 후 등록 및 저장

The screenshots illustrate the steps to register work hours for an employee. In the top screenshot, the '휴가사유' (Leave Reason) dropdown menu is open, and '예외인정' (Exceptional Recognition) is selected. In the bottom screenshot, the '휴가사유' dropdown menu is closed, and the '예외인정' button is highlighted in blue. The interface also includes a table for '종사자 근무시간' (Employee Work Hours) with columns for NO,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급여형태 (Salary Type), 근무형태 (Work Type), 근무시작 (Start Time), and 근무종료 (End Time).

○ 종사자가 중국 등 4개국을 방문 후 입국 또는 종사자의 동거 가족이 중국 등 4개국을 방문 시 감염예방 차원에서 증상 유무를 떠나 업무배제를 하고 ‘유급병가’로 처리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 (업무배제 시) 1일 8시간,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
... 세부사항 제12조에 따른 ‘병가일수’에 불포함 가능

※ 중국(싱가포르, 태국, 일본 포함)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또는 가족관계 확인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보관 필요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인정 기준

○ 수급자 감염 우려 등 예방 조치 일환으로 외부강사가 방문하지 않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가산 인정 여부

- 고시 제62조에 따라 외부강사가 제공한 맞춤형프로그램 실제 제공 횟수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 적용하며 외부강사가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가산 인정 불가

2.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범위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프로그램관리자) 등 배치 가산 인정 기준

○ (사유) 불특정 다수의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업무특성을 고려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예외 기준 원칙 >

◆ 감염우려 등으로 방문상담이 불가한 경우, **유선상담(월 2회) 수행 시 인정**

* 수급권 보호 및 가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급여제공 중의 월 2회 유선상담(수급자, 종사자)하고, 상담간격은 가능한 7일 이상 되도록 노력 ... 기존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서식에 기재(월 2회)

◆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는 상담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록(제24호 서식)을 반드시 보관

- 수급자(동거가족 포함)가 확진 또는 접촉자로 구분되는 등의 사유로 월 중 방문요양 급여가 종료(중단)된 경우, 방문상담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고시 제57조제2항에 준하여 해당 월에 한해 가산 인정함.
- 수급자(동거가족 포함)가 접촉자로 구분되었으나 방문요양 급여는 제공 중인 상황으로 사회복지사의 방문상담은 불가한 경우, 사회복지사가 급여제공 시간 중의 유선상담(월 2회)을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가산 인정함.
- 사회복지사(프로그램관리자)가 격리된 경우, 시설장이 급여제공 시간 중의 유선상담(월 2회)을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가산 인정함.
- 사회복지사(프로그램관리자)가 중국 등 4개국 방문 또는 사회복지사(프로그램관리자)의 동거가족이 중국 등 4개국 방문하여 14일간 업무 배제한 경우, 시설장이 급여제공 시간 중의 유선상담(월 2회)을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가산 인정함.
 - ※ 중국(싱가포르, 태국, 일본 포함)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또는 가족관계 확인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보관 필요
- 수급자(동거가족 포함)가 중국 등 4개국 방문하여 14일간 사회복지사(프로그램관리자)가 방문상담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사(프로그램관리자) 급여제공 시간 중의 유선상담(월 2회)을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가산 인정함.
 - ※ 중국(싱가포르, 태국, 일본 포함)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또는 가족관계 확인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보관 필요

- 수급자(보호자)가 감염 우려로 사회복지사(프로그램관리자) 방문을 거부하여 일부 수급자를 방문 상담하지 못한 경우
 - 사회복지사 및 프로그램관리자가 방문상담을 대체하여 급여제공 시간 중의 유선상담(월 2회)을 각각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및 프로그램관리자 가산을 인정함.
 - 다만,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가 유선상담을 월 2회 수행 시 사회복지사 가산을 위한 상담 횟수(월 2회)로 인정함.
 - ※ 상담 거부 사유와 수급자 안부,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상담 내용을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서식에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3. 주야간보호 급여 인정범위

☐ 월 한도액 추가산정 인정 기준

- 주야간보호 기관의 휴업 또는 수급자가 감염우려로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20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
 -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 고시 제13조제7항의 후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월 한도액 50% 추가 산정 가능
 - * 전산등록 경로 : 급여비용청구 / 급여내용 자료관리화면 / 서비스 내역 저장 / 특정내용등록 / 월 20일 미만 이용사유 / 기타(텍스트로 코로나 관련 사유 기재)

☐ 미이용일 산정 기준

- 주야간보호 기관의 수급자가 감염우려로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고시 제32조제3항에 따른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 산정 가능
 - ※ 주야간보호 기관의 휴업신고를 하고 운영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 불가

4. 급여비용 인정범위

☐ 장기요양기관이 휴업한 경우

- 기관 내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종사자도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급여비용 청구 불가

☐ 감염된 수급자만 시설 외 장소로 격리 이송된 경우

- (격리기간 10일 이내) 격리기간만큼 외박수가 인정
- (격리기간 10일 초과) 연속하여 최대 15일 외박수가 인정
 - ※ 수급자 등 감염 사실 관련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격리 이송이 필요한 내용이 대한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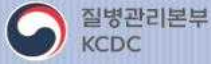
☐ 수급자 전원이 시설 외의 장소에 격리 이송된 경우

- 격리기간 일수에 따라 외박수로 산정하되, 최대 15일 인정
 - ※ 수급자 등 감염 사실 관련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격리 이송이 필요한 내용이 대한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보관

☐ 수급자 전원과 종사자가 시설 외의 장소에 격리된 경우

- 시설(단기보호 포함) 외 타 장소에서 해당 기관 소속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1일당 급여비용 인정

1.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2.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3. 눈·코·입 만지지 않기!
4.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 ①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 ②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감염병 예방 수칙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지역번호+120, 1339 문의



감염병이 의심될 때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



동물 접촉 금지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기증상자(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 기침시 마스크 착용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 해외감염병 NOW 에서!

발행일 : 2020.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주요증상

발열

폐렴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

위험요인

중국 방문 후
증상 발현



중국 방문객은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동물
접촉 금지



발열, 호흡기증상자와의
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중국 방문 후, 증상*발생 시

*주요증상: 폐렴,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특히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게시일 : 2020.1.29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